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가단27049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규

피 고 1. B

2. C

판결 선고 2020. 12. 10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가. 피고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. 6. 25. 접수 제421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 하고, 나. 피고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. 1. 23. 접수 제39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송인권

별지